



## □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

## ○ 제출서류

- △ ① 현역·공중보건 의사등복무지원서, ② 신원진술서(A),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, ④ 기본증명서(상세), ⑤ 신용정보조회서
- ④ 기본증명서(상세)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- ⑤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- ※ ①,②,③ 서식 및 지원 안내문은 홈페이지(병무소식→공지사항) 참고(24. 1. 10. 게시)  
(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)

## ○ 작성 시 유의 사항

- △ 현역·공중보건 의사 등 복무지원서
  - 지원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체크, 서명 날인 필수(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도 서명 필수)
- △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
  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- △ 의무사관후보생(의과) 전공의 수련 동의서 \* 서식 붙임4 동의서 참고
  - 의과 지원자 중 29세(1995년생)만 작성 : 치과·한의과 해당없음
- 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(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)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## ○ 기타 안내사항

- △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 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사항」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반드시 안내

##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

- 의무사관후보생 포기·취소 가능 여부
  -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\*되면, 「병역법시행령」 제120조에 따라 **의무사관후보생 취소·포기 불가** \* 병적편입 : '24. 5. 1.
- 제한연령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및 수련기관 퇴직(레지던트 미승급 포함)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 
-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
-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
  - 과정 수료자, 수련 중단자,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**장교(군의원)**,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
-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
  -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,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
-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
  -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

2024. . .

**병 무 청 장**